

##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 상품설명서

무배당 KB손보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(신탁제공용)



◆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의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□ 상품 설명

| 구분          | 내용  |
|-------------|---|
| 상품제공기관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KB손해보험</li> </ul>  |
| 상품유형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율보증형보험</li> </ul>   |
| 상품특징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으로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월 부담금 납입 시점의 적용이율을 이율보증기간 종료 시까지 확정 적용하는 상품입니다.</li> <li>이율보증기간(만기) : 1년, 2년, 3년, 5년</li> </ul>   |
|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“이율보증형 적용이율”을 적용하며,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됩니다.</li> <li>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“이율보증형 적용이율”을 결정합니다. 지표금리는 국고채수익률, 회사채수익률, 지방채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. 단,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%를 최저한도로 하며,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, KB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br/>* 홈페이지 : <a href="http://www.kbinsure.co.kr">www.kbinsure.co.kr</a> &gt; 공시실 &gt; 보험상품공시 &gt; 퇴직연금 &gt; 퇴직연금사업자공시 &gt; 원리금보장상품현황</li> </ul>  |
|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(상품변경 포함)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</li> <li>중도해지이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율보증형 1년 : 경과기간 6개월 미만 적용이율 X 80%, 경과기간 6개월 이상 적용이율 X 90%</li> <li>이율보증형 2년 : 경과기간 12개월 미만 적용이율 X 80%, 경과기간 12개월 이상 적용이율 X 95%</li> <li>이율보증형 3년 : 경과기간 18개월 미만 적용이율 X 80%, 경과기간 18개월 이상 적용이율 X 90%</li> <li>이율보증형 5년 : 경과기간 12개월 미만 적용이율 X 50%, 경과기간 24개월 미만 적용이율 X 60%<br/>경과기간 36개월 미만 적용이율 X 70%, 경과기간 48개월 미만 적용이율 X 80%<br/>경과기간 48개월 이상 적용이율 X 90%</li> </ul> </li> </ul> |
| 특별 중도해지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음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</li> <li>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</li> <li>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</li> <li>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</li> <li>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</li> <li>가입자가 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하여 중도인출 하는 경우</li> <li>가입자가 확정기여형제도로 변경하는 경우</li> <li>전출입 등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 |
| 만기 후 운영방법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의 새로운 단위 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회사는 가입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합니다.</li> <li>단, 확정급여형의 경우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,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.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.</li> </ul>  |

## □ 기타 안내사항 (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 관련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| 내용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예금자 보호여부             | <p>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</p> <p>* 회사가 운영주체인 DB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</p>  |
| 상담 및 분쟁조정<br>에 관한 사항 | <p>이 상품에 대한 문의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kbinsure.co.kr">www.kbinsure.co.kr</a>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, <a href="http://www.fss.or.kr">www.fss.or.kr</a>), 한국소비자원 (국번없이 1372)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,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 |

고객콜센터 1544-9520 <http://pension.kbinsure.co.kr>